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인용조문의 관련법 개정과 명칭변경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명확성 제고 등 감면조례 조항 개정 : 안 제5조
-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 명확히 함 : 안 제8조, 안 제23조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 정비 : 안 제12조, 안 제16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기한 연장 : 안 제24조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제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8조와 안 제2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안은 문화재와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항의 규정형식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 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타 감면규정형식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한 일반적 규정형식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 50을 경감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 50을 경감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재와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항의 규정형식을 타 감면규정형식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서 현행 조례의 규정형식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6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안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제12조)과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제16조)

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법안으로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4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274조와 제275조에서는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 제24조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50%씩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274조와 제275조의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시한(당초 2002년 12월 31일)이 2005년까지 연장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